

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

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기준을 변경함에 있어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3(예고내용 등)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0. 19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

1. 전 명 :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변경
2. 근 거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의3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
3. 변경사항
 - 거주(사업)기간 점수구간 변경
 - 거리점수(거주(사업)지와 주차구획의 거리기준) 측정거리 축소
 - 공유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특별 가점 신설
 -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장기대기자 특별 가점 신설
 -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명칭 변경
4. 적용시점 : 2022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(2022. 4. 1. ~)
 - ※ 공유사업 참여 점수는 공유지역 확대시기 고려하여 2022년 하반기 배정(2022. 10.~) 시 적용예정
5. 공고기간 : 2021. 10. 19. ~ 11. 9. (20일 이상)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로 서면 제출(방문 또는 우편, 팩스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기한 : 2021. 11. 9. 까지
- 제출양식 : 의견제출서 【별첨1】
-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(02-3153-9666)
 - 우편 : (우)03937,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) 마포구청 교통지도과
 - FAX : 02-3153-9699

붙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전·후 각 1부. 끝.